

고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3. 9. 27.]



안전한 일터, 행복한 고창

고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2023.09.27 훈령 제5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560-28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및제5조에 따라 고창군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창군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군수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 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5조(준수 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를 군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9.1.4, 2023.9.27.>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군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며, 그에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3.9.27.>

제7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점검·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안전점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 지휘·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9.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10.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1.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12.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3.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장 또는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 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보건의 외부 위촉을 위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점검·지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업무 및 관계법과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 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고창군 사업장 내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0.6.23.>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개정 2023.9.27.>

나. 위원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군수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담당자 <개정 2023.9.27.>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 근로자 대표

나.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과의 장으로 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4, 2020.6.23., 2023.9.27.>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직무) 위원회는 고창군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14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군수는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14조에서 정하는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제16조(자료 제시) 군수는 위원들이 위원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재해 발생시

3.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 시

제18조(참고인의 출석) ① 노·사 양측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결과 공지) ①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의결 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정상의 기술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규정된 시간(사무직근로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분기 6시간 이상)에 맞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7.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7.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9.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 ④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8시간 이상)와 작업내용을 변경한 때(2시간 이상)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종사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8.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9.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10.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제2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
2. 안전관리자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
3. 보건관리자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3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

제5장 안 전 관 리

제25조(안전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고창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방호조치) ① 해당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기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순시)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안전순시를 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지적서를 2회 이상 발부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차량안전운행) ①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매년 3월까지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용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 건 관 리

제33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거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제34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 ① 군수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안전보호구 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군수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군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군수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 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법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9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25조 2항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안전사고-관리감독자, 직업병-보건관리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⑦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⑧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3월 중에 전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43조(포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업무 처리에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 품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우수한 안전, 보건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3.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우수자
4. 안전, 보건관련 대외 포상자

제44조(징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성적이 불량한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규정, 수칙, 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근로자 및 감독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3. 재해보고를 지연시켜 사고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보고 및 증언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및 관련자
4. 시정지시서를 연 3회 이상 발부받은 사람
5. 그 밖에 중대한 과실로 고창군에 손해를 끼친 사람

제4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 군수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군수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가스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3.9.2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04. 훈령 4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6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울력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울력행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20.06.23. 훈령 47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27. 훈령 5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